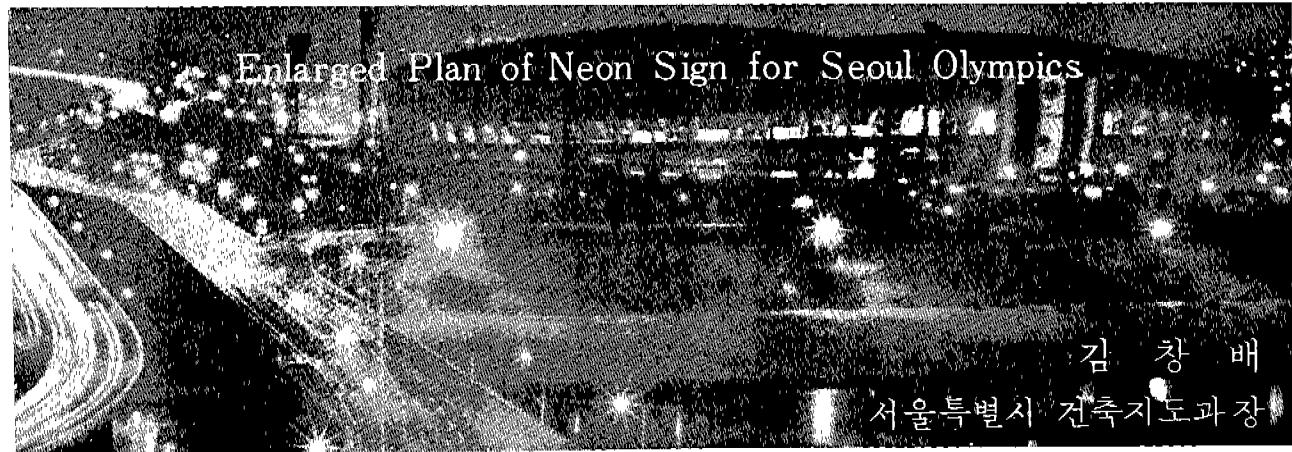


올림픽 대비 네온싸인 확대방안



1. 배경

서울시에서는 네온싸인 (Neon Sign) 광고물 설치를 정부방침에 의거 전면 허용기로 함에 따라 올림픽을 대비하여 확대설치를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광고물의 설치는 관계 규정에 의거 설치할 수 있으며, 무단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위반광고물에 대하여는 부단히 계통 및 단속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위반 및 불량광고물은 정비되어야 되며, 이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네온싸인 광고물 설치를 전면 허용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업소에서 수준높은 네온싸인 광고물을 설치하여 우리 시가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 일익을 담당하여야 되겠습니다.

네온싸인 광고물이란 네온관등 (燈)을 이용한 광고물을 말합니다.

네온관등은 가늘고 긴 유리관의 양단에 전극을 부착하고 네온가스 (Neon Gas), 아르곤가스 (Argon Gas) 등을 주입하여 전류를 통함으로써 발생하는 방전을 이용한 냉음극 방전등을 말합니다.

이때 네온가스를 주입하면 적색,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면 청색의 빛을 내며, 유리관에 형광 도료를 착색하는 정도와 구분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얻은 다양한 색상을 이용하여 옥내외 광고물, 특히 많은 옥외광고물을 제작, 사용하게 되며, 점등에는 네온 변압기 (누설변압기)를 사용하고, 그의 전압은 15,000볼트 이하, 단락전류는 50밀리 암페어 이하가 되도록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온관등은 1910년 프랑스 화학자 George Claude 박사에 의하여 발명되었으며, 파리 만국박람회에 조명용으로 첫선을 보인 후, 1912년 파

리 둠마르드 거리의 쿠와벨 궁전에 설치, 점등되었고, 그간 개발을 거듭하여 오늘날의 광고등으로서 자리를 굳혔습니다.

동양에서는 일본이 최초로 미국에서 기술을 도입하여 1918년 동경 진자에 설치하였고 우리나라에는 일본인에 의하여 전래되어 1956년경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상점가에 우리의 기술진에 의거 제작,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설치금지와 해제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56년경 : 서울, 부산 등 상점가에 등장
- 1960. 1. 4 : 전력부족으로 네온싸인 소등 조치
- 1962. 2. 4 ~ 1967. 11. 24 : 네온싸인 사용 허용
- 1967. 11. 25 ~ 1968. 7. 19 : 전력사용 악화로 제한 조치
- 1968. 7. 20 ~ 1972. 11. 28 : 네온싸인 허용
- 1972. 11. 28 : 석유파동(Oil Shock)으로 사용 금지
- 1977. 3. 25 : 사용금지 일부 해제 (병원의 “병원” “中” 등)
- 1979. 7. 1 : 사용금지 일부 해제 (병원, 약국, 관광호텔 등)
- 1982. 1. 23 : 사용금지 일부 해제 (백화점 등)
- 1982. 8. 1 : 사용금지 일부 해제 (역, 터미널 등)
- 1985. 3. 28 : 사용금지 일부 해제 (쇼핑센터 등)
- 1985. 5. 23 : 사용금지 일부 해제 (대형 광고, 올림픽 등)
- 1986. 7. 11 : 설치금지 (의료기관, 약국, 관광호텔, 역, 터미널 등 제외)
- 1987. 6. 1 : 설치금지 해제
- 1988. 4. 12 : 네온싸인 확대 설치 유도

2. 네온싸인 설치 확대 방안

네온싸인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이 일천할 뿐만 아니라 설치 허용과 금지를 단기간 빈번히 거듭함에 따라 기술향상이 부진했으며 기히 설치하였던 것도 사용치 아니함으로써 자연 폐기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기존시설은 특정업소에 국한되어 있고, 설치금지를 전면 허용한 이후에도 신설되는 곳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규칙이 광고물 설치의 규제와 제한에만 치중하다 보니 광고물을 설치할 업소에서는 네온싸인 설치를 기피하게 되었고, 더우기 값비싼 설치비는 더욱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87. 6. 30 현재 설치현황을 살펴 보면

○ 총 설치개소 : 3,338개소

· 업소별 - 유흥업소 : 1,090개소

- 일반상점 : 832개소

- 식품점 : 363개소

- 기타 : 1,053개소

· 규격별 - 1m² 미만 : 795개소

- 1m² 이상 ~ 5m² 미만 : 2,198개소

- 5m² 이상 : 345개소

’87. 7. 9 설치 허가후 ’88. 1. 31 현재까지의 현황을 보면

○ 설치 허가개소 : 150개소

· 유형별 - 둘출광고 : 130개소

- 벽면광고 : 7개소

- 올림픽광고 : 13개소

· 규격별 - 1m² 미만 : 77개소

- 1m² 이상 ~ 5m² 미만 : 47개소

- 5m² 이상 : 26개소

’88. 5. 31 현재 설치현황은

○ 총 설치수 : 4,132개

· 5m² 이상 : 533개

· 1 ~ 5m² 미만 : 2,717개

· 1m² 미만 : 882개소

○ 설치허가수 : 818개

이상에서와 같이 올림픽이 가까워질에 따라 설치 수량도 다소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온싸인 설치를 더욱 확대 유도하기 위하여 '87. 6 네온싸인 설치 금지해제에 따라 시행한 서울시 네온싸인 광고물관리 지침을 '88. 4 대폭 완화 조치하였습니다.

첫째, 네온싸인 설치 제약요건을 최소화하고 둘째, 네온싸인 설치에 대한 형태, 규격 등 신축성을 부여하여 세째, 특정지역, 특정업소에 대한 네온싸인 설치를 적극 권유키로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자면 종전 시행한 관리지침에서

- 건물 벽면간판 -

○ 설치방법 : 일반상업광고 배제

- 4층이상 건물 벽면의 전면 상당기준 (혹은 탑재외) 그 이하로서 창호등, 개구부의 밀폐 불가 (벽체에 직접 굽거나 도안을 입체형으로 부착하되, 벽면으로부터 40센치미터 이상 둘출 불가)

○ 표시내용 : 자사상호 및 상지불에 한하여 표시

○ 규격 : 세로 5m 미만으로 가로는 건물 길이와 조화있는 적정 규격

○ 허가기간 : 3년

○ 수수료 : 세로 2m 미만 × 가로 2m 미만 = 4만원
세로 2m 이상 × 가로 2m 이상 = 8만원

- 둘출간판 (지주) -

○ 설치방법 : 도로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 높이 8m, 폭 1m 미만

이를 다음과 같이 대폭 완화 조치하였습니다.

- 건물 벽면간판 -

○ 설치방법 : 자사상품 광고 허용

- 4층 이상 건물 벽면의 전면 및 측면 네온 허용

- 기타 사항은 변경없음

○ 표시내용 : 자사상호 및 마크, 자사 상품에 한하여 표시

○ 규격 : 변경없음

○ 허가기간 : 변경없음

○ 수수료 : 변경없음

- 둘출간판 -

○ 설치방법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1m로 완화

폭 2m 이하 (단, 판형이 아니고 조형화할 경우는 3m 이하)

이와 같이 설치방법과 표시내용을 대폭 완화 조치함과 아울러 수도 서울이 국제도시로서 손색이 없도록 확대 설치를 정부시책으로 적극 유도하는 반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규제지역과 불법 위반 네온싸인은 단속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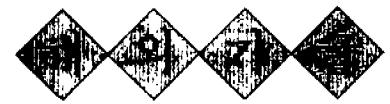
목전에 임박한 역사적인 서울올림픽을 대비하여 더욱 더 많은 네온싸인을 설치하여 환경을 정비하고, 특히 내·외국인들의 야간관광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기대하면서 우리 시의 설치 기준을 참고하시도록 기술합니다.

3. 설치기준

| 구 분 | 설 치 기 준 |
|-------------------------------|---|
| ○ 환경보존을 위한 설치 규제구역 설정 (설치 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전용지역 교육및 연구지구내 기타 구청장이 따로 정한 지역 등 (지역지정시 광고물등 관리법 시행 규칙 제17조에 의거 고시) |
| ○ 네온싸인 자체의 미관 고려를 위한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색계열 색상표출제한 (광고면적 적의 2분의 1 이하) |
| ○ 전기화재, 교통안전에 대한 고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공사, 설계도서 등은 관계법 규에 부합 - 관계법규 : 전기사용안전관리법 제15조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주변에 동 신호등과 혼동될 수 있 |

| 구 분 | 설 치 기 준 | 구 분 | 설 치 기 준 |
|----------------------|--|------------------|---|
| ○네온싸인 규제를 위한 운영규정 보완 | <p>는 형태의 네온싸인 설치 제한 (심의규정)</p> <p>-관계법규 : 도로교통법 제4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온싸인 광고면적 10m² 이상은 신의 상정후 결과에 따라 처리 • 횡간판 및 종간판의 네온싸인은 규격기준(폭70cm 이내) 적용 배제 • 지주간판의 네온싸인은 도로경계 선으로부터 이격거리 1m, 폭 2m (조형화할 경우 3m) • 기존 옥상광고물의 네온싸인화는 금지 | -점멸등 설치 허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축용, 축하장식용에 한하여 소형 점멸등 설치 허용 |
| ○특례 규정 -특수지역 지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특수지역에 한하여 위법, 금지광고물을 제외한 제반광고물의 네온싸인 설치규제 완화(지역지정은 구청장 요청에 의하여 시장이 승인) • 색상 표출의 자율화 등 | -전물벽면 네온싸인 설치 허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방법 : 4층이상 전물벽면(전면 및 측면), 상단기준(옥탑제의) 그 이하로서 창호등의 개구부, 밀폐불가(벽체에 직접 굳거나 도안을 입체형으로 부착하되 벽면으로부터 40cm 이상 둘줄 불가) • 규격 : 세로 5m 미만 × 가로전 물길이 조화 • 표시내용 : 자사 상호 마크 및 자사 상품광고 • 허가기간 : 3년 • 수수료 정수 -세로 2m 미만 × 가로 2m 미만 4만원 -세로 2m 이상 × 가로 2m 이상 : 8만원 |

교류전동기보호장치



3상 교류유도 전동기의 작동매커니즘을 매우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디지털식 전자계전기가 개발되었다.

GEC Measurements사가 개발해 낸 이 Motormaster 200은 주로 압축장치등과의 접속을 위해 모터에 이용되며, 퓨즈 및 회로차단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보완해 주는 특징을 지닌다. 장치는 3상 유도전동기에 가장 적합하며, 고온 및 저온열곡선 형성에 의한 작동제어 기능을 가짐으로써 과부하에 의한 모터 고장을 정확하게 방지하는 특징이 있다. 그밖에도 선택적으로 전류 저연장치를 적용함으로써 접지 실패에 의한 고장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열의 과부하조건 및 단상(單相) 전력공급, 접지실패 환경등에서도 전동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리식의 출력 및 작동방식 절환장치도 별도로 공급될 수 있다.

장치의 전면 계기관에 부착된 컬러부호 표시의 선택스위치를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각각의 장치는 그것이 연결된 전동기의 전류 및 시간특성과 정확하게 조화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단상전류의 유입방지 장치는 각종 전력용융기기가 유연하게 작동을 개시하도록 하며, 선택적인 직류보조장치도 공급되고 있다. 이 계전기는 고온 및 화염에도 손상되지 않는 주조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재료의 케이스에 내장되어 사용, 내구성 및 견고성이 뛰어나다.

〈英國產業뉴스 제공〉

